

## 제 4 장 창업현장실습

제 12 조(창업현장실습 교육과정) ①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하고 학수번호는 공통으로 부여한다.

③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기제로 정규학기에만 운영한다.

④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자에 한하여 학점 취득을 1회로 제한한다.

⑤ 지도교수는 창업중점교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승인한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할 수 있다.(개정 2022. 3. 1)

⑥ 본 과정의 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지도비를 지급하며, 시수를 부여하지 않는다.

제 13 조(신청자격) 창업현장실습교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

2.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창업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
3.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자

제 14 조(지원신청서 제출)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
1.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
2. 창업실습 교과목이수확인서 또는 창업지원센터장 추천서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
3. 창업현장실습 신청서

4. 창업현장실습 수행 계획서

제 15 조(대상자 선발)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위원회 심의 후 선발한다.

제 16 조(이수학년 및 기간) ①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②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사전계획에 따라 한 학기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, 기간은 해당 학기 학사일정에 따른다.

제 17 조(수강신청 및 등록)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기 개시 전 창업지원센터에서 교무처에 일괄 수강신청을 요청한다.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
②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규학기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이수학점 및 평가) ①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15학점으로 한다.

②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평가는 학기 종료 후 지도교수가 발표, 현장점검, 제출

서류 등을 종합하여 창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에 해당학기의 성적반영을 일괄 요청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현장실습 수행결과보고서
2. 창업현장실습 지도교수 평가서

제 19 조(성적평가 및 표기)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, 성적은 P/NP로 처리하고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20 조(대체이수 및 특별이수인정) 창업현장실습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보고서 및 세미나 등으로 대체하여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. 단,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

제 21 조(창업현장실습 기관 인정기준)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며 창업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한할 수 있다.

제 22 조(지도교수) 창업현장실습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현장지도 및 면담 보고서
2. 실습기간 중 지원 및 협의사항 파악 및 조치
3. 실습성과물 평가

제 23 조(실습생 의무) 실습생은 창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실습생은 창업현장실습 주간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2. 창업현장실습 실습생은 교내시설 이용 시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 24 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.